

의안번호	제2604호
의 결	2023.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3. 3. 23.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4
----------	------

발의연월일 : 2023. 3. 23.

발 의 자 : 김석한, 김향숙,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의원(5인)

1. 제안이유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현행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규정 내용에 맞지 않는 제명으로서 그 내용 또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전문임업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 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3.(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있음

제 정 안	제출의견(녹지공원과)	검토의견	반영 여부
<p><u>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때,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u></p> <p>⇒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범위에 대해 조 제목은 ‘적용 범위’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음</p> <p>⇒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의 관내 주소이전을 독려하기 위함</p>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산림관련

단체 및 전문임업인(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사업
7.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

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들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립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